붙임1 **피난시설 사용법 안내**

❶ 경량칸막이

□ 일반개요

○ **(정의)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략구조의 벽**

○ **(기준)**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대비하여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

○ **(연혁)** 경량칸막이는 '92.7.25. 개정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, '95.5.27. 소방법에서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설치시 피난기구 설치면제

□ 유지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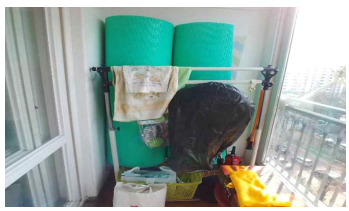
○ **(설치)** '05년 이전 시공된 판자형(일자형)·편(중)복도형 아파트에 많이 설치, 발코니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'통통' 소리가 남





○ **(장애요인)**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, 세탁기 등을 설치 신속한 파괴 및 피난 지연


수납장 설치


물건 적치


물건 수납

○ **(사용방법) 석고보드 등 경량칸막이를 망치, 발차기로 부수고 피난**





❷ 대피공간

□ 일반개요

○ **(정의)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,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**

○ **(기준)**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 설치

○ **(연혁)** '05.12.2.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경량칸막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

□ 유지관리

○ **(설치)** 타원형・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 다양

		
주방 부근 설치	발코니에 설치	발코니 확장 거실 옆 설치

○ **(장애요인)** 다용도실,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피공간 용도를 인지 못함

		
창고용도 사용	세탁기 설치	물건 수납

○ **(사용방법)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 요청**

		
사다리차 이용 대피공간 인명구조	소방대원 대피공간 접근	대피공간에서 인명구조

❸ 하향식 피난구

□ 일반개요

○ **(정의)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**

○ **(기준)**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(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 설치 면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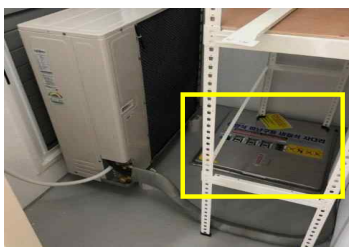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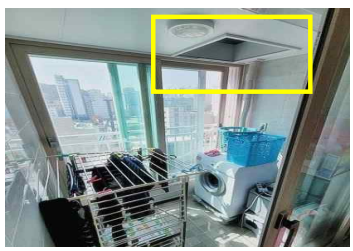
○ **(연혁)** '10.2.18.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마련

□ 유지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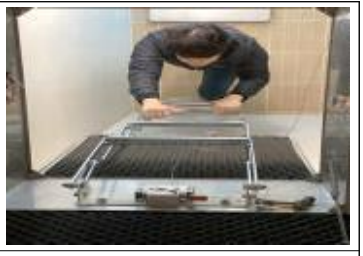
○ **(설치)** 대피공간, 발코니, 실외기실 등에 설치

		
대피공간 내에 설치	발코니에 설치	실외기실 내에 설치

○ **(장애요인)** 하향식 피난구 용도를 잘 몰라 주변 물건 적치로 사용 장애

		
피난구 인근 수납공간 설치	피난구 아래 장애물 설치	피난구 상단 물건적치

○ **(사용방법)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,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**

		
상부도어 개방(90°)	하단도어 개방	사다리 펼치고 피난